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결 정

사 건 21진정0695000 거주지를 이유로 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군수

### 주 문

1.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 2. 당사자 주장

### 가. 진정인

진정인은 ○○○○○○○○○센터의 장이다. 피진정인은 ○○군에 미거주 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행상의 장애인이 친지에 방문하거나, 조문하러 오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피진정인의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 나. 피해자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시에 거주하고 있다. 2021. 4. 27. 아버지를 만나고자 ○○군에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였다.

### 다. 피진정인

○○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당시부터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군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벽산 까닭에 이용대상을 제한하게 되었다.

2022년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할 예정으로, 매년 추가 도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여건이 나아지면 이용자 범위를 ○○군민으로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

#### 라. 관계인

##### 1) ○○○○○○○협회 ○○군지회

2022. 1. 1.부터 ○○군 특별교통수단 5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에는 심사신청서 제출 자격이 '주민등록상 현재 ○○군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어 ○○군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용대상자 심사 업무 또한 피진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이용대상자로 승인되는 경우에만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청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비에 대해 보조(서울특별시 40%, 그 외 50%)하고 있다.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 9.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표준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가.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군은 2012. 8. 7.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위 조례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규정하였으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 피진정인은 「교통약자법」과 위 조례에 따라 2013. 1. 1.부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피진정인은 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군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에도 거주지 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관리를 ○○○○○○복지관에 위탁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인 자에 한하여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서식을 업무자료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승인하였다.

마. 2022년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자가 ○○○○○○○협회 ○○군지회

로 변경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군민에 한하여 승인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바. 피진정인은 위탁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5대의 구입비용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2022. 3. 기준 ○○군에 거주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장애인(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11명이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위 이용대상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보유한 특별교통수단은 5대로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사. ○○○도 ××개 시·군 중 ○○군을 제외한 ××개 시·군 모두 장애인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교통수단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16조 제5항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서도 이용대상을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임의로 이용대상을 ○○군 거주자로 제한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만들어 위탁기관들

에 업무자료로 제공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특별교통수단이 충분치 못하여 ○○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우선 만족시키고자 이용대상을 ○○군 거주자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진정인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대상을 ○○군 거주자로 제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피진정인이 도입한 5대의 특별교통수단은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피진정인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이거나 ○○군민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이용 자격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인 자로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교통약자법」 위반행위로 향후 이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인 피진정인에게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의 소관부처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할 책무가 있는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점검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3.

위원장 남 규 선

위원 한 석 훈

위원 서 미 화

## <별지>

### 관련 규정

####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4. 「○○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